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65
----------	-----

발의연월일 : 2008. 07. 01.
발 의 자 : 김태훈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저소득주민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월납부액”을 “월 보험료납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원기준”을 “지원시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자치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9조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 “보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대전광역시 저소득 주민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p>
<p>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월 10,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p> <p>1.~6. (생략)</p>	<p>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 ----- ----- ----- ----- ----- ----- ----- 1.~6.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내용)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p>	<p>제3조(지원내용) ①----- ----- ----- -----월 보험료납부액----- -----</p>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시기-----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내 지원한다.

②-----보험료-----

제5조(예산확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확보) -----보험료

제6조(조사실시) ① (생략)

제6조(조사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험료-----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7조(지원중단) -----

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2. (생략)

제9조(비용부담) 이 조례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은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70을 자치구는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보험료-----

1.~2. (현행과 같음)

제9조(비용부담) -----보험료-----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제8조

[제정 2007. 4. 27 법률 제8403호]. 시행일 2008. 7. 1.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는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18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8. 7. 1 김태훈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08. 7. 1

다. 상 정 일 자 :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8. 7. 18)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훈의원)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시행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시행(제정 2007. 4. 27, 시행 2008. 7. 1)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 국민건강보험료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규정하고,
- 안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내용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조손세대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지원예산이 1,200만원 정도로 지원금액대비 저소득 주민의 복지혜택 증진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